

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
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구미산단 제조기업의 경영 여건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, 경제 위기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「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- 나. 본 사업은 구미산단 제조기업 실태조사, 기업 DB 구축, 지역경제 동향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 상시적·반복적 분석과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로, 전문 조사·분석 역량과 통계·DB 구축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다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- 2) 필요성 :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로, 통계·조사 수행 경험과 지역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1) 구미산단 제조기업 실태조사 및 기업 DB 구축·관리
- 2) 지역경제 및 산업 동향 분석
- 3) 월간·정기 구미경제동향 보고서 제작·발간
- 4) 글로벌 경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
- 5) 지역경제 위기징후 조기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3. ~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사업비	비고
300	100	20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3. 부서의견

- 본 사업은 지역경제 현황을 상시적으로 진단·관리하는 분석 기반 사업으로, 구미시 경제정책 수립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임
- 전문 조사·분석 인력과 수행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수탁기관 내부 급여기준을 적용하고, 조사·분석 수행에

필요한 최소 범위의 전담 인력을 편성하였음

나. 사업비는 구미산단 제조기업 실태조사, 경제동향 분석, 보고서

제작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비 위주로 산정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출	○ 인건비	100	100	100	100	100	500
	○ 사업비	200	200	200	200	200	1,000
	계	300	300	300	300	300	1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		-	-	-	-	-	-
도비		-	-	-	-	-	-
시비		300	300	300	300	300	1,500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300	300	300	300	300	1,500

5. 부대의견 :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, 예산심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고성화(☎480-610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300,000	
인 건 비	1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인력(식사급 이상) 8명 × 8개월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급여기준 의거
사 업 비	2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미산단 제조기업 실태조사 120,000천원 ·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/제작(인쇄비) 30,000천원 · 전문가 자문(300,000 × 20명 × 5회) 30,000천원 · 기업정보 수집(크레딧 이용) 10,000천원 · 국내 여비(100,000 × 8명 × 5회) 4,000천원 · 회의비(30,000 × 10명 × 10회) 3,000천원 · 세미나 개최(3,000,000 × 1회) 3,000천원

소 관 부 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시 병 연
	담 당 자	고 성 화 (480-6103)